

瑞山市自然景觀保全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2000. 12. 20  
産業建設委員會

##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2000. 10. 17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2000. 10. 19
- 라. 上程日字 : 2000. 12. 20

##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環境保護課長 魯商根)

### 가. 提案理由

-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근거로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생태적, 경관적가치 등의 훼손방지를 위하고,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나. 主要骨子

- 가. 자연경관보전은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제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나.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지역에서는 생태적·경관적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대상사업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사항을 정함(안제4조).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자연경관의 보전과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 유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지역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투자하여 일반대중이 자유 사용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투자없이 공공용으로 사유재산을 이용되는 지역은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조례는 자연경관의 보존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권리제한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조례 제3조의 제한사항은 포괄적으로 제한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칙등에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수정가결

- 수정안 별첨

# 서산시자연경관보존조례안

서산시자연경관보존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2항3호의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축물”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의 11호 가목에 의한 일반숙박시설”로 한다.

## 서산시자연경관보존조례안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①(생략) 1.~5.(생략) ② 1. ~2.(생략) 3.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축물.	제3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①(현행과 같음) 1.~5.(현행과 같음) ② 1. ~2.(현행과 같음) 3.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의 11호 가목에 의한 일반숙박시설.

의안번호	제 174호
의결년월일	2000. 10 . . (제 회)

## 서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0. 10. 17.

# 서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의안 번호	제 174 호
----------	---------

제출년월일 : 2000. 10. 17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 제정이유

- 가. 자연경관의 보전과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 나. 시의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시조례로 제정하여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지역의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가.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역에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안 제3조제1항)
  - 1) 산책로, 등산로, 해수욕장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써 훼손되는 경우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 2) 도로변에 있는 숲, 거목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 3) 자연휴식지안의 숲, 거목등을 훼손하므로써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어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4)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암석, 암벽, 폭포, 해안선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가항의 경우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제한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안 제3조제2항)

- 1) 폐기물관리법제26조제3항에 의한 지정폐기물처리사업장
- 2) 산림법제90조의2제1항에 의한 채석사업장
- 3)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축물

##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련부서협의 : 별첨

## 서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경관의 보전과 자연의 훼손방지를 통하여 시민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 자연경관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산림·하천·호수 등 생태적, 경관적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제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제3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①시장은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태적·경관적 가치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책로, 등산로, 해수욕장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변에 있는 숲·거목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자연휴식지안의 숲·거목등을 훼손함으로써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어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전통시찰, 역사적 유물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5. 기타 암석·암벽·폭포·해안선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시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에 의한 지정폐기물 처리사업장.
2.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에 의한 채석사업장.
3.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축물.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